

평창군 가로수 조성·관리 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08. 11. .

제 출 자 : 평 창 군 수

1. 제안 이유

- 본 조례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로수의 조성·관리 기준에 관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으로 가로수를 조성 및 유지·관리하고, 도시녹화와 경관향상을 위한 공익적 기능 향상 및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함.

2. 주요 내용

- 가. 제1장은 총칙으로서 규정의 목적과 가로수의 관리대상, 관리청, 가로수 기본계획 수립·시행, 가로수 위원회의 운영방안을 규정함.
(안 제1조부터 제6조까지)
- 나. 제2장은 가로수 조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수종의 선정 및 구비조건, 식재기준, 관리시설물, 가로수 조성 시 관련 행정기관 · 담당부서 및 기타 시공자의 협의사항을 규정함.
(안 제7조부터 제10조까지)
- 다. 제3장은 가로수의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병해충 방제, 가로수 사업승인에 따른 원인자 비용부담, 부담금의 강제징수, 벌칙 및 과태료 처분, 가로수 손괴 신고자 보상금 지급, 주민참여, 점검 등의 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부터 제20조까지)

3.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

나. 예산조치 : 필요

다. 관계부처승인 : 필요 없음.

라. 입법예고 : '08. 8. 12 ~ 9. 2(21일간) 실시, 제출된 의견 없음.

마.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 없음.

평창군 가로수 조성·관리 조례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제1항에 따라 가로수의 조성·관리 기준에 관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으로 가로수를 조성 및 유지·관리하고, 도시녹화와 경관향상을 위한 가로수의 공익적 기능 향상 및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① “가로수”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도로의 도로구역 안 또는 그 주변지역에 심는 수목을 말한다.
 1. 「도로법」 제8조 및 제11조에 따른 도로(고속국도를 제외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보행자전용도로 및 자전거전용도로
 3. 「농어촌 도로정비법」 제4조에 따른 면도 및 리도
- ② “관리청”이란 조경시설과 가로수를 관리하는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를 말한다.
- ③ “가로수 지주대”란 가로수의 기상적·인위적 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버팀 시설물을 말한다.
- ④ “가로수 보호틀”(이하 ‘보호틀’이라 한다)이란 가로수의 생육영역 확보와 보행자 등으로부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가로수 하단부의 지표면에 보도 포장과 구분하여 설치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 ⑤ “가로수 보호덮개”란 보호틀 안의 흙의 균음을 방지하여 수분흡수, 공기순환 등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인공설치물, 나무파쇄물 또는 자갈 등의 시설물을 말한다.
- ⑥ “가로수 보호대”란 정류장·횡단보도 주변 등과 각종 건설공사로 가로수의 훼손이 예상되는 곳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가로수 둘레에 설치한 시설물을 말한다.

⑦ “도시림”이란 도시에서 국민 보건 휴양·정서함양 및 체험활동 등을 위하여 조성·관리하는 산림 및 수목을 말한다.

⑧ “생활림”이란 마을숲 등 생활권 주변지역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와 그 주변지역에서 국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과 아름다운 경관의 제공 및 자연학습교육 등을 위하여 조성·관리하는 산림 및 수목을 말한다.

제3조(관리대상) ① 법 제2조제6호 및 법 시행령 제2조제4항에서 정한 도로와 이 조례【별표 1】에서 정한 도로의 도로구역 안 또는 그 주변지역에 심는 수목을 대상으로 한다.

② 집중적으로 관리해야 할 가로수는 【별표 2】와 같다.

③ 녹지공간 조성 및 기타 경관을 목적으로 조성된 수목도 관리 대상으로 한다.

④ 이 조례는 평창군 행정구역내 가로수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관리청) 법 제21조제1항 및 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로수조성 및 관리규정(산림청 고시)’에 따라 평창군 행정구역내 일반국도, 지방도, 군도, 기타도로의 가로수 관리청은 【별표 3】과 같이 조정한다.

제5조(계획의 수립·시행) ① 군수는 법 제20조 및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도시림·생활림·가로수(이하 “도시림 등”이라 한다)의 조성·관리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수립하는 도시림 등 조성·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도시림 등의 현저한 상황변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1. 도시림 등 시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도시림 등의 기능 구분에 관한 사항
3. 도시림 등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사항
4. 도시림 등의 보전·보호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도시림 등의 기능 증진 및 유지에 관한 사항
6. 도시림 등의 재해 예방 및 복구에 관한 사항

7.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에 소요되는 수종 등의 수급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8. 가로수의 지역별·노선별 수종 등 현황 분석
 9. 그 밖에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 ③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가로수위원회 또는 주민 공청회 등을 거쳐야한다.

제6조(가로수위원회) ① 가로수 관련 중요사항에 대해 심의·자문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는 가로수위원회를 운영한다.

1. 가로수조성·관리계획에 대한 심의
 2. 지역적 특성을 살린 가로수 조성·관리의 시책 개발에 대한 자문
 3. 가로수 관련 사업의 계획, 설계에 대한 자문
 4.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에 대한 자문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③ 위원은 가로수, 조경 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의회로부터 추천을 받는 등 주민의 대표가 될 수 있는 자, 가로수(녹지, 조경 포함) 관련단체가 추천하는 자, 군 산림관련 공무원, 기타 지역의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 ④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둔다.
- ⑤ 간사는 가로수 업무 담당주사로 하며, 서기는 가로수 업무 담당자로 한다.
-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⑦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
 2. 위원회의 심의 업무와 관련하여 기밀 등 심의사항을 누설할 때
 3. 위원이 심의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할 때
 4. 기타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 ⑧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

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⑨ 위원장은 위원회를 통할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⑩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평창군 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장 가로수 조성

제7조(수종의 선정 및 구비조건) ① 가로수의 수종은 다음의 각 호로 한다.

1. 평창군의 기후와 토양에 적합하며 주변경관과 어울리는 수종
2. 평창군의 역사와 문화에 적합하고 향토성을 지닌 수종
3. 평창군민의 보건에 나쁜 영향을 끼치지 않는 수종
4. 환경오염 저감, 기후 조절 등에 적합한 수종
5. 기타 특정 목적에 적합한 수종

② 가로수가 구비하여야 할 조건은 다음과 같다.

1. 수형이 우수하며 정돈되어 있을 것
2. 발육이 양호할 것
3. 가지와 잎이 치밀하게 발달하였을 것
4. 병충의 피해가 없을 것
5. 재배수인 경우 활착이 용이하도록 미리 옮겨심기 하였거나 완전한 뿌리 끊기 및 뿌리돌림을 실시하여 잔뿌리가 잘 발달하였을 것

제8조(식재기준) ① 평창군의 가로수는 차도와 보도의 폭, 이용하는 보행자의 수, 평창군의 친환경적 이미지 제고 등을 고려하여 【별표 4】에 따라 도로의 보도폭에 따라 병렬다층식, 병렬식, 다층식, 단열단층식으로 조성하고 관리한다.

② 새로 신설되거나 변경되는 도로의 경우 관련 행정기관에서는 식재공간 및 예산을 확보하여 【별표 4】의 기준에 따라 별도의 식재기준을 마련하고 사업계획 전 가로수(녹지) 담당부서와 협의 후 사업을 계획·

결정·발주한다.

③ 지하의 인공구조물이나 폐지된 도로의 아스팔트로 인하여 가로수의 생육·식재가 어렵거나, 가로수를 수시로 이동할 필요가 있는 지역일 경우에는 저수장치 등을 갖춘 이동식 화분에 가로수를 식재할 수 있다.

④ 보도 및 도로폭이 협소한 경우나 녹지공간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 생울타리 및 관목, 벽면녹화 시설물을 이용하여 가로수의 역할을 할 수 있다.

⑤ 평창군의 가로수는 【별표 5】에 따라 도로의 보도폭에 따라 노선별로 식재 가로수의 규격을 조정하여 식재할 수 있다.

제9조(관리시설물) ① 보호틀 등 가로수 관리시설물은 【별표 6】에 따라 도로의 보도폭을 기준으로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 새로 신설되거나 개조·변경되는 도로의 경우 관련 행정기관에서는 【별표 6】에 준하여 별도의 가로수 관리시설물 설치 기준을 마련, 가로수 담당부서와 협의 후 설치한다.

③ 기존 도로의 가로수 관리시설물은 연차별 계획을 세워 【별표 6】의 기준에 따라 교체하여야 하며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 시 가로수 담당부서는 【별표 6】의 기준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조성협의 등) ①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담당 행정기관·담당 부서 및 기타 시공자는 계획·설계단계에서부터 가로수 식재공간 및 예산을 반영하여 가로수 관리청과 반드시 협의하여야 한다.

1. 도로의 신설, 변경, 폐기 등으로 산지 또는 토지의 전용이 필요할 경우
2. 도로의 신설, 변경, 폐기 등으로 관련 계획과 설계를 작성하는 경우
3.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도로에서 도로표지 등 안전시설물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4.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도로에서 전신주 등 통신·전기시설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5.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도로의 보도에 새로이 포장시설을 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6. 가로수에 대한 가지치기 등 가로수 관리사업을 실시하고자 할 경우
7.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도로·보도에 새로이 상·하수도 배수관로 및 전기시설 등의 신설·변경·폐기 등으로 인해 가로수의 수형·생육 및 관리시설물에 지장을 줄 경우
8. 기타 녹지공간 조성 및 경관의 역할을 하고 있는 수목에 대해서도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의할 경우 가로수 담당부서는 가로수 식재기준 및 관리시설물 설치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련 법령에 따라 검토하여야 한다.

1. 도로의 신설·변경 계획에 가로수를 조성할 계획·설계가 포함되었는지의 여부. 단, 식재설계는 조경 자격증이 있는 자가 실시하여야 함
2. 도로의 설계에 가로수 식재공간이 적정하게 반영되었는지의 여부
3. 가로수 식재설계에 예산이 타당하게 반영되었는지의 여부
4. 도로표지 등 안전시설물과 전신주 등 통신·전기시설의 설치 시 위치 선정의 적정성, 안전시설물의 종류·규격의 적정성, 통신·전기시설의 지하 매설화 가능성
5. 보도 포장시설의 신설 또는 교체시 보호틀의 확대·축소의 필요성
6. 그 밖에 관련법령, 조례,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7. 기타 녹지공간 조성 및 경관의 역할을 하고 있는 수목에 대해서도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장 가로수 관리

제11조(병해충 방제) 관리청은 가로수에 발생하는 돌발해충 및 주요해충에 대하여 【별표 7】에 따라 적기에 방제하여야 한다.

제12조(원인자 비용부담) ①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리청 외의 자(이하 '원인자'라 한다)가 관계법령과 절차에 따라 가로수를 식재·이식·제거 또는 가지치기 등의 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관리청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가로수 담당부서 외의 기관이 시행할 경우에도 가로수 담당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 원인자가 제1항에 의한 승인신청을 할 경우에는 【별지서식 1】을 작성하여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관리청은 승인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원인자에게 승인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관련 법령, 조례, 계획 등과 적합하지 않을 경우 내용을 보완하여 7일 이내에 재신청을 요구할 수 있고 관리청은 재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관리청은 가로수와 가로수 관리시설물이 사고 또는 위해로 인위적인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 훼손자에게 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⑤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인을 제공한 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비용의 산출은 사업을 시행 또는 감독하는 자로서 조정자격증이 있는 자가 설계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⑥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은 관리청이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 경우 원인자로부터 가로수 관리청이 인정하는 사업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징수하여 시행한다.

⑦ 제6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의 효율성 등을 위해서는 원인자가 제1항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준공 14일 전에 가로수 담당부서의 의견을 들어 준공하여야 한다.

⑧ 그 밖에 비용부담에 관한 세부내용은 【별표 8】과 같다.

제13조(부담금의 강제징수) ① 관리청은 제12조에 따라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20일 이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납부기간을 정하여 독촉하여야 한다.

② 관리청은 제1항의 경우에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세법 제27조(가산금 및 독촉)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관리청은 부담금 또는 가산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그 기한 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제14조(벌칙) 관리청은 법 제74조제1항제2호에 따라 법 제21조제1항의 승

인 없이 가로수를 식재·이식·제거 또는 가지치기 등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5조(신고 등) ① 관리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최초로 신고한 자(이하 '신고인'이라 한다)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가로수를 손괴한 자가 자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가로수관리 시설물을 고의로 훼손하는 행위
2. 교통사고 등 인위적으로 훼손하는 행위
3. 가로수 또는 조경시설을 다른 용도로 이용하는 행위
4. 가로수의 무단 이식, 벌목, 절도, 가지치기 등의 행위
5. 그 밖의 가로수에 대한 인위적인 피해를 유발하는 행위

② 신고인에 대한 보상금 지급기준은 【별표 9】와 같다.

③ 신고인이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신고할 경우에는 【별지서식 2】를 작성하고 현장사진 등 증거물을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④ 관리청이 제3항의 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서식 3】의 훼손자 신고인 접수대장에 기록하고 지체 없이 현장 확인을 통하여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 다음의 사항을 조치하여야 한다.

1. 신고인에 대한 보상금 지급
2. 관련법령에 의한 훼손자의 처리
3. 3회 이상 빈번한 교통사고가 발생된 도로의 가로수에 대한 복구 타당성 검토
4. 훼손된 가로수의 복구 계획 수립 및 복구

제16조(주민참여 등) ① 가로수 관리청은 가로수 관리에 주민참여를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권장할 수 있다.

1. 물주기
2. 병해충 발생 신고
3. 가로수 생육에 지장을 주거나 피해를 주는 장애물의 제거
4. 사고 또는 고의로 가로수가 피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있을 때 가로수 관리청에 신고

5. 비상재해 시 긴급조치 지원 및 협조

② 가로수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주민들에 대한 홍보와 안내를 실시한다.

1. 가로수 또는 관리시설에 가축을 매거나 광고물을 부착하는 행위
2. 가로수 또는 관리시설을 공작물의 지주로 이용하는 행위
3. 보호틀 또는 보호대 내에 쓰레기를 버리거나 물건을 적재하는 행위
4. 기타 가로수의 생육이나 관리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일체의 행위

제17조(점검) ① 관리청은 노선별로 가로수 정기점검을 5월, 11월 등 최소 연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관리청은 【별표 7】의 병해충 발생시기 전·후에 수종별로 수시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8조(보고) ① 관리청은 제4조에 의한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계획을 수립하는 즉시 이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리청은 제16조에 의한 정기점검 결과를 해당연도 12월 말까지 산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9조(자료유지) 관리청은 가로수의 합리적 관리를 위하여 노선별로 관리대장을 만들어 전산화된 대장으로 작성하여 관리한다. 이 경우, 법 시행규칙 제24조제4항에 의한 가로수관리대장의 내용을 필수적으로 포함하여야 한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조례로 정하는 관리대상 도로(제3조제1항 관련)

도로의 종류	가로수 관리청	비 고
자동차전용도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평창군수	
면도 (농어촌도로정비법)	평창군수	4 m 이상
사실상 가로수가 식재된 도로	평창군수	6 m 이상

※ 각 실정에 맞도록 가로수관리청 구분기준 등 변경

[별표 2]

집중관리대상 가로수(제3조제2항 관련)

집중관리대상 가로수	도로명	가로수 관리청	비 고
평창읍 벚나무 가로수	31번 국도 군도 1호선 (문화예술로)	평창군수	관리청과의 협의로 변경할 수 있음.
평창읍 은행나무 가로수	중로(보)1-1, 중로(보)2-1, 중로(보)2-2 소로1-4, 소로1-5	평창군수	
평창읍 자작나무 가로수	대로(주)2-1, 중로(보)2-1	평창군수	
대화면 은행나무 가로수	중로(보)2-1, 중로(보)2-2	평창군수	
용평면 은행나무 가로수	중2-1 (용평로)	평창군수	
진부면 은행나무 가로수	중(주)1-1, 중(보)2-1	평창군수	
진부면 도시숲 수목	국도 6호선	평창군수	
대관령면 자작나무 가로수	대로(주) 3-3, (눈꽃길) 중로(보)1-1	평창군수	
대관령면 은행나무 가로수	대로(주) 3-3 (눈꽃길)	평창군수	
오대산 전나무 명품가로수	국도 6호선 (오대산로)	평창군수	
미탄면 은행나무 가로수	지방도 42호	평창군수	

[별표 3]

도로별 가로수관리청 구분(제4조 관련)

도로의 종류	지역구분	관리청 위임		비고
		현 행	변 경	
일반국도	군(郡)지역	광역시장·도지사	군 수	
지방도	군(郡) 지역	도지사	군 수	국가지원 지방도 포함
시도·군도·구도 등 기타도로	전지역	군 수	군 수	

※ 유형별 각 지자체 실정에 알맞은 가로수관리청 구분기준 적용가능

[별표 4]

도로별 식재조성 기준(제8조제1항 및 제2항 관련)

도로의 종류(또는 유형)	조성 기준	비 고
① 광로 또는 보도폭 10m 이상	병렬다층식	식재조성기준은 노선별 또는 보도폭에 따라 병렬다층식, 병렬식, 다층식, 단열단층식의 조성 기준 적용
② 대로 또는 보도폭 7m 이상 ~ 10m 미만	병렬식	
③ 중로 또는 보도폭 4m 이상 ~ 7m미만	다층식	
④ 소로 또는 보도폭 4m 미만	단열단층식	

[별표 5]

도로별 가로수조성 규격(제8조제5항 관련)

도로의 종류(또는 유형)	식재 규격	비 고
① 광로 또는 보도폭 10m 이상	흉고직경 12cm이상, 근원경 10cm이상	도로 실정에 맞도록 변경가능
② 대로 또는 보도폭 7m 이상 ~ 10m 미만	흉고직경 10cm이상, 근원경 8cm이상	
③ 중로 또는 보도폭 4m 이상~7m 미만	흉고직경 8cm이상, 근원경 10cm이상	
④ 소로 또는 보도폭 4m 미만	흉고직경 6cm이상, 근원경 8cm이상	

[별표 6]

가로수관리 시설물의 규격 및 종류(제9조 관련)

도로의 종류(또는 유형)	시설물 규격 및 종류	비 고
① 광로 또는 보도폭 10m 이상	대상형 보호틀 및 보호덮개, 직사각형 보호틀 및 보호덮개 반원형 보호틀 및 보호덮개	
② 대로 또는 보도폭 7m 이상 ~ 10m 미만	대상형 보호틀 및 보호덮개, 직사각형 보호틀 및 보호덮개 반원형 보호틀 및 보호덮개	
③ 중로 또는 보도폭 4m 이상 ~ 7m 미만	직사각형 보호틀 및 보호덮개, 정사각형 보호틀 및 보호덮개 반원형 보호틀 및 보호덮개	
④ 소로 또는 보도폭 4m 미만	직사각형 보호틀 및 보호덮개, 정사각형 보호틀 및 보호덮개 반원형 보호틀 및 보호덮개	

※ 보호덮개는 입지여건에 따라 지피식물 등 다양하게 처리 가능

[별표 7]

가로수 주요해충 및 방제법(제11조 관련)

해충의 종류	가해수종	가해구분	방제법	방제시기
미국흰불나방	벗나무 버즘나무 포플러류 단풍나무 등	잎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화유충이 모여 있는 피해 가지나 잎을 절단 소각 디프제 살포 	<ul style="list-style-type: none"> 1화기: 6월 상순 2화기: 8월 초·중순
황철나무 알락하늘소	현사시 포플러류	가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피해가지 절단 소각 사이프린액제, 파프유제 살포 	5월 하순~6월 중순
재주나방	포플러류 버드나무	잎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피해가지 절단 소각 만코지 수화제 살포 	<ul style="list-style-type: none"> 1화기: 5월 초·중순 2화기: 9월 초~중순
텐트나방	포플러류 버드나무 벗나무 느티나무	잎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알덩어리 채취 소각 디프제 살포 	4월 중·하순
버즘나무 방패벌레	버즘나무	잎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할로스린 1%유제, 에토펜프록스 10% 수화제 수관살포 침투성살충제 나무주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관살포: 5월 하순~6월 초순 나무주사: 6~7월
짚시나방	포플러류 버드나무 벗나무	잎	<ul style="list-style-type: none"> 4월이전 알덩어리 채취 소각 디프제 살포 	4월 중·하순
응애류	벗나무 버즘나무 느티나무 화백 등	잎 가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살비제(디코폴, 아이트유제) 살포 (동일 약종의 연용은 피함) 	발생초기(수시)
진딧물류	벗나무 버즘나무 소나무 등	잎 가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살충제 살포 (동일 약종의 연용은 피함) 	발생초기(수시)
각지벌레류	벗나무 소나무 포플러류 등	잎 가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프라사이드 유제, 이미다크로프리트 액제 살포 (동일 약종의 연용은 피함) 	발생초기(수시)

※ 살균제 및 살충제 살포는 10일 간격으로 2~3회, 약량은 권장 농도임

[별표 8]

비용부담의 산정기준(제12조 관련)

<p>△ 피해 발생의 경우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벌목, 수간절단, 수피피해, 보호시설 파손 등의 피해로 교체하는 경우 ○ 가로수로서의 생육 및 가치가 상실되어 교체하는 경우 ⇒ 원상복구를 위한 도급공사설계비 ○ 과도한 가지(수피) 훼손으로 보호시설 설치 및 치료를 요하는 피해의 경우 ⇒ 수목비의 30% + 보호시설비 + 실작업비 ○ 경미한 가지훼손 및 보호시설을 요하는 피해의 경우 ⇒ 수목비의 20% + 보호시설비 + 실작업비
<p>△ 피해 이외의 원인 발생의 경우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식하는 경우 가. 원인자가 이식을 하는 경우 : 관리청의 승인 및 감독 ⇒ 이식에 따른 도급공사설계비 ※ 관리청의 지시에 위반시는 피해발생의 경우 적용 조치 나. 관리청에서 이식하는 경우 ⇒ 원인자가 이식에 따른 도급공사설계비 +이식비 부담 ○ 제거하는 경우 가. 원인자가 제거하는 경우 : 관리청의 승인 및 감독 ⇒ 대체식재를 위한 도급공사설계비 나. 관리청에서 제거하는 경우 ⇒ 대체식재를 위한 도급공사설계비 +제거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급공사설계비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한 원가계산(재료비 + 노무비 + 제경비) 적용하여 산정 ○ 수목비 : “가격정보” 조경수 가격, 가격이 없는 경우 시가를 적용하여 산정 ○ 하자보수를 위한 예치금 : 보증보험증권이나 수목이 고사했을 경우를 고려한 도급공사설계비를 2년간 현금 및 보증보험으로 하자책임 예치토록 한다. ○ 예치금 환불 등 : 예치기간 경과 후 수목에 대한 조경수로서의 가치여부 판단 및 하자검사를 실시하여 환불 (송달이 불가능할 경우는 가로수 예치금 환급을 위한 공시송달 공고를 14일간 하며, 환급신청하지 않을 경우 군의 수입으로 정리됨) 	

[별표 9]

훼손자 신고인 보상금 지급기준(제15조제2항 관련)

훼손자 부담금	보상금지급액	비고
10만원 미만	10,000원 상당의 재래시장 상품권	
10만원 이상 ~ 50만원 미만	20,000원 상당의 재래시장 상품권	
50만원 이상 ~ 100만원 미만	30,000원 상당의 재래시장 상품권	
100만원 이상	50,000원 상당의 재래시장 상품권	

[별지서식 1]

가로수사업(식재·이식·제거·가지치기 등) 승인 신청서(제12조제2항 관련)

가로수사업(식재·이식·제거·가지치기 등)승인 신청서							
신청인	성 명(명칭)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연락처	집: 휴대폰 :
사업 대상	가로수 위치						
	수 종		규격 (cm)	수 고 : 흉고직경 : , 근원직경 :		수량	본
이 식 사 유							
작 업 방 법							
작 업 기 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					
부담금	금 액	금 원정(\)					
	납부기간						
평창군 가로수조성 관리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승인 신청합니다. <div style="text-align: center;"> 년 월 일 신청인 (인)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font-size: 1.2em; font-weight: bold;">평 창 군 수 귀 하</div>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2. 위치도, 3 현황도, 4. 보·차도 점용허가 등 관련허가증 사본 1부							

※ 구비서류에 부담금 산출근거 첨부 가능

[별지서식 2]

가로수 등 훼손자 신고서 (제15조제3항 관련)

신고자 인적사항

- 성명 :
- 주소 :
- 전화번호 :

가로수 훼손자 신고내용

- 성명 :
- 주소 :
- 전화번호 :
- 차량번호 : (차종 : 색상 :)
- 훼손일시 :
- 훼손장소 : (도로명 번지 등 구체적 기재)
- 훼손내용 :
 - 시설물명 : 가로수
 - 수 종 :
 - 수 량 :
 - 기 타 :

가로수 훼손자 증빙자료 (사진 등)

 년 월 일
신고자 : (인)

평창군수 귀하

관계 법령 발췌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가로수"란 「도로법」 제11조에 따른 도로(고속국도를 제외한다)와 보행자전용도로 및 자전거전용도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의 도로구역 안 또는 그 주변지역에 심는 수목을 말한다.

제20조 (도시림등의 조성·관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9조의2에 따라 수립된 도시림등기본계획에 따라 그 관할 구역의 도시림등을 대상으로 도시림등의 조성·관리를 위한 계획(이하 "도시림등 조성·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시림등 조성·관리계획의 수립방법·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산림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도시림등 조성·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도시림등 조성과 관리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1조 (가로수의 조성 등에 관한 승인)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자가 다음 각 호의 행위 등을 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승인 절차, 승인 기간 및 비용 부담 등에 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가로수를 심고 가꾸기
2. 가로수를 옮겨심기
3. 가로수의 제거
4. 가로수의 가지치기 등

② 도로를 신설하는 행정기관은 그 도로에 가로수를 조성하여야 하며, 도로의 설계단계에서부터 가로수를 심을 공간을 반영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12.21]

제74조 (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9조제5항을 위반하여 채종립등에서 입목·죽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채취, 가축의 방목, 그 밖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를 한 자
2.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가로수를 심고 가꾸기·옮겨심기·제거 또는 가지치기 등을 한 자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정의)

④ 법 제2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를 말한다. <신설 2008.6.20>

1. 「도로법」 제8조에 따른 도로(고속국도는 제외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보행자전용도로 및 자전거전용도로
3. 「농어촌 도로정비법」 제4조에 따른 면도 및 리도

제19조 (도시립등 조성·관리계획)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0조에 따라 관할 구역 안의 도시립등 실태를 면밀히 조사·분석한 후 도시립등이 건강하고 기능이 최대한 발휘되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도시립등의 조성·관리를 위한 계획(이하 '도시립등 조성·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시립등 자원의 관리 및 이용의 효율성 제고, 공익적 기능 발휘, 국민의 이용 및 참여기회 증진을 고려하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도시립등 시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도시립등의 기능 구분에 관한 사항
3. 도시립등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사항
4. 도시립등의 보전·보호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도시립등의 기능 증진 및 유지에 관한 사항
6. 도시립등의 재해 예방 및 복구에 관한 사항
7. 도시립등의 조성 및 관리에 소요되는 수종 등의 수급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7의2. 가로수의 지역별·노선별 수종 등 현황 분석

8. 그 밖에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제1항에 따른 도시림등 조성·관리계획은 10년마다 수립하되, 도시림등의 현저한 상황변화 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08.6.20>

③제1항에 따른 도시림등 조성·관리계획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도시녹화계획과 상충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6.20>

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도시림등 조성·관리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08.6.20>

⑤도시림등의 기능별 구분·관리에 관한 세부사항 및 가로수의 조성·관리에 따른 수종선정, 식재 지역 등 필요한 기준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08.6.20>

⑥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6.20>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 (가로수 조성·관리) ①영 제19조제5항에 따른 가로수 조성·관리기준은 별표 10과 같으며, 그 밖에 가로수 조성·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6.20>

②산림청장은 국토의 녹색네트워크 구축과 가로수기능의 유지 및 증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시범사업을 할 수 있다.

1. 가로수 조성에 관한 사업
2. 가로수 관리에 관한 사업
3. 그 밖에 가로수와 관련된 사업

③법 제21조제2항 후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가로수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정하려는 때에는 제1항에 따른 가로수 조성·관리기준의 범위 안에서 정하여야 한다.

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로수의 조성 및 관리내용을 별지 제21호 서식에 따른 가로수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